

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제 3495호
2018. 12. 6.(목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18-386호 부동산 개업공인증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 4

제2018-3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(도시철도 및 부대시설)실시계획 변경인가 5

제2018-389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6

제2018-390호 원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45

제2018-391호 「원호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9

제2018-3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(경미한) 변경승인 고시 76

제2018-394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(3차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77

제2018-395호 도시관리계획[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 (르네상스호텔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105

제2018-396호 도시관리계획(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109

제2018-398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북아현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189

제2018-399호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7

제2018-400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(종로구 다세대주택) 정비 선도사업계획 고시220

제2018-402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름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20

◆ 공 고

제2018-2620호 서울특별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공고223

제2018-2628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24

제2018-2629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28

제2018-2630호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32

제2018-2633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233

제2018-2636호 도시계획시설(경춘제2녹지조성)사업 공사완료 공고234

제2018-264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35

제2018-2645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279

제2018-264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96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00호

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(종로구 다세대주택) 정비 선도사업계획 고시

1.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(종로구 다세대주택) 정비 선도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련 계획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(☎02-2147-7112, 팩스 02-2133-0750), 종로구 건축과(☎02-2148-2776, 팩스 02-2148-5830)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12월 6일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

-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(종로구 다세대주택) 정비 선도사업

2. 사업기간

- 2018년 2월 ~ 2020년 12월

3. 기본방향 및 목표

-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지적체계 지원을 통한 도시의 위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

4. 정비방법 및 내용

- 정비방법 결정 조서

| 관리번호 | 위치 | 중단시점 | 정비방법 | 정비후용도 | 사업기간 | 목표연도 | 사업비(백만원)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|
| 선도-4 |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389-1,6,7 | 2004.3월 | 자백재거 지원 | 공동주택(다세대) | 2018.2 ~ 2020.12 | 2020 | - | |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02호

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름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“비오름1등급 토지(비오름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름평가 1등급인 토지)”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등의 작성·고시방법)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